

제 호

소음발생건설기계 ☐ 제작·수입 ☐ 판매·사용 금지명령

수명인	상호	
	대표자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:)	
	사업장 주소 (전화번호:)	

대상제품	제작사	제작국가
	기계명칭	최대출력
	상품명칭 및 모델번호	

명령내용	☐ 귀하는 년 월 일 제 호 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대상제품에 대하여 ☐ 제작·수입 / ☐ 판매·사용의 금지를 명령합니다.		
	☐ 귀하는 년 월 일 제 호 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이행하였으나, 대상제품에 대하여 소음도 검사를 재 실시한 결과가 아래와 같이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므로, 대상제품에 대하여 ☐ 제작·수입 / ☐ 판매·사용의 금지를 명령합니다.		
	소음도 검사 재 실시 일시	년 월 일	
	소음도 검사 재 실시 장소		
	소음도 검사 재 실시 결과	※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	dB(A) dB(A)

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4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음발생 건설기계의 제작·수입 또는 판매·사용의 금지를 명령합니다.

년 월 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